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0.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0호, 2019. 9.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관의 책무)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공공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사용자 편의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 범위) 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용자를 위하여 대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신청
2. 법 제8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3.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4. 법 제10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법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영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변경확인의 신청
6.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개시 신고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 요청
9. 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
10.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관련 상담(송출국가 접촉 업무는 제외한다)
11.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 사용자에게 대한 통·번역지원 및 고충상담
1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상해보험을 말한다. 이하 "전용보험 등"이라 한다.) 가입 및 지급신청 지원
13.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14.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시 산업재해 신고
15. 사업장 요청에 따른 방문서비스,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매뉴얼, 생활용어집 제공
1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정 요건) 대행기관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례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요건 중 통역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등) ①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대행기관의 지정서 반납, 지정취소 그 밖의 사정으로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계하는 학계 또는 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4.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관계자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 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대행기관은 새로운 대행기관이 지정될 때까지는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3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반납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행기관의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 취소일 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대행계약 체결)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아 해당 사용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부당금품 수수금지) 대행기관은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제10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① 대행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업무 대행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11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를 대행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대행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대행기관이 대행업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행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대행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대행근로자 및 사업장 수, 사업주에 대한 업무별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행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대행실적, 조직·인력·시설 현황, 해당 연도 대행 업무수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50호, 2019.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제4조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담당인력이 관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일정 인원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말한다)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6조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인상에 따른 적용례) 제8조 별표 3에 따라 인상되는 위탁·대행업무 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